##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85

발의연월일: 2024. 6. 18.

발 의 자: 주철현ㆍ이병진ㆍ임호선

민형배 · 황명선 · 이원택

문금주・조계원・허 영

위성곤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 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됨.

그런데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일부 정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이 수급에 따라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는 등 농 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이 유지·보장되지 않아 생산자인 농어민의 희 생이 커지는 상황임.

쌀 및 주요 농산물은 가격변동성이 제조업 제품의 1.5배에 달하는 등 그해 기후에 따른 작황이나 재배면적의 다소로 인해 폭등과 폭락을 거듭하며 적정한 가격이 보장되지 않음에 따라 생산자인 농민의희생이 커져가고 있고, 시장개방과 인구고령화 등으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수산물도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저수온 · 적조 피해 등이 연례적

으로 발생하는데 더하여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투기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급감하며 어민들의 생존권이 심대한 위협에 직면함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의 적정한 가격을 보장해 농어민의경영 안정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의 일정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함으로써, 농어민의 경영 안정과 식량주권 확보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농수산물가격 안정제도 대상 품목, 해당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기준가격 및 차액 에 대한 지급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 설).
- 다.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

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 법률 제 호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2장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 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 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 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 산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 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 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 1.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농수산물 품목
- 2.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 3. 농수산물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
- 제16조의3(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 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 1.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 2. 농수산물의 매입ㆍ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정
  - 3. 적정 재배·양식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4.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 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 이상이어야 한

다.

- 1.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 준에 맞는 사람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6조의2(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생산자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년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을 밀한다), 생산비용 및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

수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 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정하고이를 고시한다.
- 1. 농수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농수산물 품목
- 2.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 및 기준가격
- 3. 농수산물 품목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급비율

제16조의3(농수산물가격안정심의 위원회) ① 농수산물가격안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 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해양 수산부에 수산물가격안정심의 위원회를 각각 둔다.

<신 설>

- 1.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

   항
- 2. 농수산물의 매입・비축 및

   폐기의 방법과 수량 등의 결

   정
- 3. 적정 재배·양식면적, 생산 량 등의 관측 및 추계
- 4.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 위원회 또는 수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및 해 양수산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 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1. 농수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

- <u>를</u>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3. 그 밖에 농수산물가격안정제 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농림축산식품 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